

#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0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8. .  
제출자 회계과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일부개정됨 (2022.1.1.시행, 행정안전부 훈령 제 221호)에 따라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개정법령 근거조항 정비 (안 제1조)
- 나.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, 제3조)
  - \* 사·군·구 검사위원 수 : 3명 이상 5명 이하 → 3명 이상 10명 이하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·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2. 4. 27. ~ 5. 17. (20일)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
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

나) 경기도 : 회계과

##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과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와” 로, “제84조의 규정” 을 “제84조” 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5명” 을 “1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1을” 을 “1 이하로 하되, 3명을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제2조의 규정” 을 “제2조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9조 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의 규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” 을 “제5조” 로, “범위 안” 을 “범위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제10조의 규정” 을 “제10조” 로, “제5조의 규정” 을 “제5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” 를 “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” 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10조 규정” 을 “제10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2조의 규정” 을 “제12조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회계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회계과장 두 정 호
	팀 장 직위·성명	경리팀장 차 진 복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양혜정(☎2171)



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의 지급)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 (수당의 계산)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① 제10조 규정에 따른 위원의 수당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에 해당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따라 쓴다.

-----.

제10조(수당의 지급) ① 제5조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(수당의 계산) ① 제10조-----  
----- 제5조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제12조에 따른 출장  
기간을 -----.

제13조(지급기준) ① 제10조-----  
-----  
-----.

② 제12조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**지방자치법**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50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지방자치법 시행령**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**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**3분의 1**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**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 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- ③ 감사위원회는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

[시행 2022. 1. 1.] [행정안전부훈령 제221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.]

현 행	개 정 안	개정사유
P40 3. 감사 위원 선임 ○ (생략) ○ 감사위원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군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·선임 방법·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※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음,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)	P40 3. 감사 위원 선임 ○ (생략) ○ ----- 7명 이상 20명 이하, ----- 3명 이상 10명 이하로 ----- ----- ----- ----- ※----- 1/3이하로 하되, 3명 을 초과할 수 없음, ----- ----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 개정 사항 반영</li> </ul>

**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[시행 2020. 9. 29.] [경기도김포시조례 제1735호, 2020. 9. 29.,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의 정수)** 김포시 결산검사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. 다만, 김포시의회의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3조(선임 방법 및 절차)**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김포시의회의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 시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.  
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  
 ③ <삭제 2017.6.30>  
 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.

**제4조** <삭제 2017.6.30.>

**제5조(위촉기간)**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6조(대표위원)**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.  
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  
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** <삭제 2017.6.30>

**제8조(검사협조)**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**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수당의 지급)**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. (개정 2009.7.24)

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.

**제11조 (수당의 계산)**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. <개정 2017.6.30>

**제12조(여비의 지급)**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<개정 2017.6.30>

**제13조(지급기준)** ① 제10조 규정에 따른 위원의 수당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2.10.31.,2020.9.29.>

②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6조 관련 별표 2의 국내 여비지급표 제2호에 해당액을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따라 쓴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